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총무 오 일 영 목사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 02) 399-4333~5 F.4337(국내) | 399-4292, 2042 F.4403(해외)
kmcmission@hanmail.net(국내) | kmc4341@hanmail.net(해외)



www.kmcmission.or.kr

THE GENERAL BOARD OF MISSIONS THE KOREAN METHODIST CHURCH

General Secretary Rev. Dr. Il-Young Oh

16th Fl., Methodist Building, 149, Sejong-Daero, Jongro-Gu, Seoul, Korea
TEL. +82-2-399-4333~5, 4292, 2042 FAX +82-2-399-4337, 4403
kmcmission@hanmail.net | kmc4341@hanmail.net

기감선제2-19-072호

2017. 06. 17

수 신 : 선교사 소속교회 담임목사

참 조 : 소속교회 선교부장

제 목 : 2019년 여름철 “단기선교팀” 안전에 관한 특별 주의 안내의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단기선교팀의 선교지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네팔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에서 새롭게 개정된 종교정책과 법률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하오니 단기선교팀 파송에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해외 단기선교팀 안전을 위한 요청 사항

가. 선교팀 파송 전 현지 법령, 관습,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방문 국가 안전정보를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참조 <http://0404.go.kr>)

다. 선교팀의 방문 시 현지의 감리교회선교사회의 조력을 받으시고, 비상시를 위하여 연락망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선교팀을 코디하는 현장의 선교사는 반드시 현지선교사회와 단기팀의 일정을 공유하여 비상시에 상황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특별히 중국, 네팔의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교회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2.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세계선교사역부 02) 399-4341 또는 2042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http://pf.kakao.com/_rKXTT/chat

(검색아이디: kmc4341)

3. 첨부자료 : 중국, 네팔 내 종교 활동 시 주의사항 안내문 (문화관광부 제공)

총 무 오 일 영 목 사 (직인생략)

□ 현황

- 중국 정부는 종교·신앙의 자유·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안전과 사회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활동에 대한 관리·통제 강화
 - (정부기구 조정) 종교사무에 대한 당의 통일적 리더십 강화 등을 위해 종교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종교사무국을 당 중앙위원회 소속 통일전선공작부 산하로 귀속하여 관리·통제
 - ※ 단, 국가종교사무국의 대외 소속(국무원 직속기관)·공식명칭은 유지
 - (법규정비) △종교단체·활동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한 수정 『종교사무조례(국무원령)』 시행('18.2월), △『종교 임시장소 심사비준 관리방법(종교사무조례 하부 규정)』 발표 및 실시('18.6월), △『중국 국경내 외국인 집단종교활동 관리방법』 제정 추진
 - (단속강화) '17년 하반기부터 우리국민들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중국 당국의 △행정구류, △강제추방, △비자연장 거부, △한인교회 집회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

주요 단속 사례

- ▶ '18. 1월 신장 위구르자치구 정부는 종교활동 관련, 우리국민 50여명 강제추방, 同 조치 및 비자심사 강화 등으로 신장지역 교민수 급감(300여명 → 50여명)
- ▶ '18. 4월 상해시 정부, 푸둥은혜교회 목사 연행 조사 및 자진출국 요청
- ▶ '18. 4월 국가안전부, 항저우 소재 한인교회(열린문교회) 폐쇄 명령
- ▶ '18. 5월 초중순 산둥성·요녕성·광둥성 등 지역에서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우리국민 24명에 대해 행정구류 및 강제추방 조치 실시
- ▶ '18. 8월 길림성 당국, 길림한인교회 목사,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 자녀 등 우리국민 10여 명에게 자진출국 요청
- ▶ '18. 9월 광시좡족자치구 국가안전청은 한국OMF선교회 소속 우리국민 6명 조사중

□ 주의사항

- 중국에서는 종교활동과 관련 ①장소제약, ②종교지도자에 대한 사증 및 자격제한, ③외국인 종교활동에 중국인 참여 금지, ④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활동 금지 등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제가 있어 중국에 방문(체류)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종교활동시 중국의 종교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
 - ※ 특히,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 종교활동 관련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사 또는 체포·구금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주중대사관(+86-10-8532-0404)이나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영사조력 요청

□ 종교 관련 네팔 형사법(2018. 8. 17 발효) 강화

- [제155조]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에 대해 증오하거나 멸시할 수 없으며, 이들의 신성한 장소, 종교유적지, 사원, 묘지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훼손, 오염시키거나 피해를 입힐 수 없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0루피(USD 300) 이하의 벌금
 -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징역 및 벌금을 납부 후 7일 이내 추방
- [제156조]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문자, 상징, 구두, 문서 또는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 위해를 가할 수 없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0루피(USD 200) 이하의 벌금
- [제157조] 오랜 종교적 전통에 대해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0루피(USD 100) 이하의 벌금
- [제158조]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0루피(USD 500) 이하의 벌금
 -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징역 및 벌금을 납부 후 7일 이내 추방

□ 네팔 의료봉사팀 허가 요건

- 1)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네팔측 의료기관(병원)이
 - 의료봉사팀 전원의 의료행위 자격증
 - 의료봉사팀을 파견하려는 외국 단체의 등록증
 - 의료봉사의 목적, 의료 처치의 수준 및 의료봉사팀 운영 기간을 기재한 문서를 네팔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네팔의 의료위원회(Nepal Medical Council)의 승인 필요
- 2) 네팔측 의료기관은 1)번 절차를 거쳐 보건부의 승인을 획득한 후 의료봉사 활동을 계획하는 지역의 최고 행정책임자의 승인 필요

※ 종교활동 관련 네팔 당국으로부터 조사 또는 체포·구금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주네팔대사관(비상전화+977-98510-33178)이나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영사조력 요청